

# 이해상충방지업무처리지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그 하위법규를 포함하여 “관련법규”) 제44조(이해상충의 방지),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임직원, 투자자 상호 간 및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투자자 이익 우선 원칙)

- ① 투자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이익은 회사, 주주, 임직원 및 관계회사 등의 이익에 우선한다.
- ② 투자자 간의 이익은 상호 등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3조 (이해상충 방지 기본원칙)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2.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3. 관계회사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
  4.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5.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 ②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관련

법규와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련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조직 및 운영)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수행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통제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업 간의 부당한 매매거래 정보 이용 및 선행매매,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매매거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준수여부 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 시 점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 시마다 이해상충업무 · 이해상충거래자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 판단 수행 여부
2. 이해상충 가능성 거래인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통지하는지 등의 여부
3. 이해상충 정도에 대한 평가 실행 여부
4. 이해상충 저감 활동 내역 및 중대 사안인 경우 거래중단 내역
5. 이해상충거래와 관련한 보고 및 공시사항 이행 여부

6. 사내 이해상충업무 수행부서 및 계열사 등 외부의 이해상충 가능성 거래자 사이의 정보교류 및 회의 · 통신에 관한 기록 상황

③ 제1항의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규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정보교류 차단장치

### 제6조 (운영원칙 및 대상)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문 간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업무 간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부서를 구분하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구축함에 있어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회사 내부) 및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회사와 판매회사, 계열회사 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은 금융투자업(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에의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교류금지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로 한정하며 경영분석, 회계, 재무, 전산, 컴플라이언스, 상품개발 업무 등 후선업무는 차단장치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7조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①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법규 또는 감독당국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무 간
2.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기업금융업무 간

②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이 아닌 부서를 통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 교류금지정보를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③ 고유재산운용 담당부서장은 관련법규가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유재산 운용업무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에 고유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지침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 (사내 정보교류 차단의 주요 내용)

- ①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 정보제공 등의 교류가 금지되는 정보와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5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
    - 마.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정보
  2. 제1호에 의하여 교류가 금지되는 정보라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된다.
    -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이 경우의 승인은 계속적·반복적 정보교류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의 임원 및 직원의 겸직은 금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감사는 제외한다.

③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전산설비 분리의 정도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ID,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④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회의 · 통신의 기록유지는 교류금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교류금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예외적인 정보교류 허용 절차(Wall-Cross)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 자 또는 송화자는 2영업일 이내에 일자, 담당자, 상대방, 장소, 주요 논의내용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의 및 통신 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부서장은 1개월 간의 부서별 회의 및 통신 일지를 다음 달 5영업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회계 기간 말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회사와 회사의 계열회사 및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간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 또는 감독당국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 주요내용)

① 회사와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 간에 정보제공 등의 교류가 금지되는 정보와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라.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마.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정보

2. 제1호에 의하여 교류가 금지되는 정보라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 한 경우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된다.

3. 제9조 및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계열회사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판매회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보제공담당부서장(각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활동 혹은 마케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집합투자재산 정보제공요청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판매회사로부터 접수하여 요청내용을 심사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보제공담당부서장은 직접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판매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하는 정보의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집합투자재산 정보

제공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임원(비상근 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겹쳐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사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록유지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8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의 및 통신일지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된 참석자를 소집자로 본다.
- ⑤ 제4항의 회의 및 통신의 기록 유지는 교류금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교류금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 (다른 법규의 적용)

정보교류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등과 관련된 별도의 제한은 당연히 적용된다.

#### 제3장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 제12조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 ① 투자자 또는 그를 대리한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가 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집합투자재산 장부, 서류 열람 청구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투자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환매 청구할 때까지 특정 주기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제1항의 장부·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집합투자재산 장부·서류 열람 청구서(정기)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의 청구에 응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2장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각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4장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통제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

### 제1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정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라 함은 회사가 신탁재산 운용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의 대주주, 회사의 계열회사 등 업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 제1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감독)

- ①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금지, 예외적 허용 사유 성립 여부 판단, 예외적 허용 사유에 의한 거래 시의 통제 관리 등을 감독한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실무 수행 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한 판단, 예외적 허용 사유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예외적 허용 거래 수행 시의 절차와 업무 방법 등을 준법감시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제15조 (예외적 허용 사유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지침)

- ① 준법감시인은 예외적 허용 사유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시작되기 전, 실무 담당자를 통해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관련 내용이 사전 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전고지 사실에는 거래 예정일과 거래의 만기일, 이해관계인의 이름, 당해 거래 규모, 당해 거래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수익, 당해 거래의 법령상 허용 사유, 당해 거래로 인한 관련 투자자에의 영향, 대체거래 혹은 대체 거래상대방의 존부 여부, 시장 평균 거래 가격과 당해 거래 가격과의 비교, 시장 평균가격과의 차이 발생 시 원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예외적 허용 사유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및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신탁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은 예외적 허용 사유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리 내용에 대해 캠플라이언스 일지 기록과 대표 이사에 대한 보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장 일반적 이해상충 요소의 파악 · 평가

#### 제16조 (이해상충 요소의 파악 · 평가)

-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제반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재적인 이해상충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이 지침 또는 기타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의 파악·평가·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법을 사용한다.

- 1단계로 잠재적, 실재적인 이해상충 요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 2단계로 수집된 이해상충 요소를 규제적, 법적 및 평판 리스크 측면에서 분석한다.
- 3단계로 최종 분석의 결과 및 필요 시 권고안을 도출한다.

#### 제17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보고 및 시정)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이해상충 발생이 있는 요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임직원은 이를 금융투자업의 수행에 반영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자기운용펀드 투자에 관한 관리

#### 제18조(회사 고유재산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관리)

회사가 설정하여 운용하는 자기운용펀드에 회사 고유재산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 고유재산은 모든 유형의 자기운용펀드(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에 투자 가능하다.
- 회사 고유재산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시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야 한다.
- 회사 고유재산의 자기운용펀드 건별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하로, 총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자기운용펀드 투자자와 직접매매거래를 통한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금지한다.
- 고유재산운용자는 자기운용펀드에의 투자를 이유로 당해 자기운용펀드의 관리 및 운용에 간여할 수 없다.

6. 준법감시인은 당해 자기운용펀드와 관련하여 고유재산운용부문과 신탁재산운용부문과의 정보차단벽 관리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7. 준법감시인은 전 3호 내지 5호 사항 외 이해상충발생 방지와 관련하여 당해 자기운용펀드와 여타의 자기운용펀드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감시 및 사후점검을 철저히 수행한다.

#### 제19조(임직원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관리)

회사가 설정하여 운용하는 자기운용펀드에 임직원이 투자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모든 유형의 자기운용펀드(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에 투자 가능하다.
2. 임직원이 자기운용펀드에 투자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로 한다.
3. 임직원이 투자한 자기운용펀드의 투자금 회수 시 이에 관한 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제18조 각호에 준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 회의 및 통신 일지

## 부서 : 부문(본부)

담당	부서장	화 인	준법감시인

(별지 1-1호)

## 회의 및 통신 일지

부서 : 부문(본부)

담당	부서장	확인	준법감시인

구 분 회의(통신) 제목	회의(통신) 개요			
회의(통신) 일시	202 년 월 일 :			
회의(통신) 장소				
참석자 (통화자)	소속 회사	부서명	직 위	성 명
주요 논의내용				

(별지 제2호)

## 집합투자재산 정보제공요청서

수 신 : 자산운용 현

구 분	요 청 내 용
대상 집합투자기구	
정보의 사용목적	
제공요청 정보의 종류와 내용	
제공 기준일	
당사는 귀사가 운용하는 위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내역을 기록·유지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판 매 회 사 :	(인)
부서, 연락처 :	
담 당 자 :	

(별지 제3호)

집합투자재산 정보제공대장

부서 : 부문(본부)

번호	일 자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	정보제공 내역
	접수	승인	제공			
1						
2						
3						
4						
5						

(별지 제4호)

### 집합투자재산 장부·서류 열람 청구서

수 신 : 자산운용 현

구 분	청 구 내 용
집합투자기구 명칭	
계좌번호	
청구 자료	<input type="checkbox"/>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input type="checkbox"/>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input type="checkbox"/>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청구 사유	
제공 기준일	202 년 월 일
자료송부 방법	전자우편(E-mail) F A X
본인은 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장부·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의 거래 또는 다른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투 자 자 :	(인)
주소/연락처 :	
위 투자자는 당사가 판매하고 귀사가 운용하는 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임을 확인하며, 당사가 제공받은 장부·서류는 청구한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겠습니다.	
판 매 회 사 :	(인)
부서/담당자/연락처 :	

(별지 제4-1호)

### 집합투자재산 장부.서류 열람 청구서(정기)

수신 : 자산운용 현

구 분	청 구 내 용
집합투자기구 명칭	
계좌번호	
청구 자료	<input type="checkbox"/>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input type="checkbox"/>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input type="checkbox"/>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청구 사유	
제공 기준일	202 년 월 일
자료송부 방법	전자우편(E-mail) F A X
본인은 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장부.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의 거래 또는 다른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투자자 : (인)	
주소/연락처 :	
위 투자자는 당사가 판매하고 귀사가 운용하는 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임을 확인하며, 당사가 제공받은 장부.서류는 청구한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 투자자가 환매 청구하는 경우 귀사로 즉시 통보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회사 : (인)	
부서/담당자/연락처 :	